

경영연구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 6. 19		16		
2	2018. 3. 1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경영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기업경영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산학협동을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교육, 연구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경영학, 경제학 관련 연구 업무
2. 국내·외 기업경영에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자문
3.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4. 전문 연구지 및 전문도서의 발간 및 배포
5. 교내·외 학술과제 및 연구용역의 수행
6. 국내·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
7.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부대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연구소에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.

- ① 연구부, 조사부 및 행정실을 둔다.
-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,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각 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1. 연구부 : 연구사업, 학술연구지 발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2. 조사부 : 자료의 수집, 정리, 분석 및 관련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에 관한 사항
 3. 행정실 : 연구소 행정업무의 수행과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, 감사 및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임원) ① 연구소에는 소장과 사무국장 및 감사를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개정 2018.3.1>

- ② 소장 :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연구소를 대표하며 사업을 총괄한다.
- ③ 사무국장 :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내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<개정 2018.3.1>
- ④ 감사 :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,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한다.

제7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8.3.1>

- ② 연구위원 : 본 대학교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책임연구원 :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- ④ 선임연구원 :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 석사과정 학생 혹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- ⑤ 연구원 :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- ⑥ 연구보조원 :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- ⑦ 자문위원 : 본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자로, 외부기관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위촉한다.<신설 2018.3.1>

<전문개정 2017.6.19.>

제8조 (총회) 총회는 연구소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의장은 소장이 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학기 중에 개최하여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등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. 임시총회는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9조 (재정) 연구소 경비는 대학교 연구보조금, 학술연구사업의 수익금, 고유사업의 수익금, 기타 기부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 (예산 및 결산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2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3조 (운영세칙)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